

무보험 외국인 코로나 관련 진료비 지원 최종 보고서

(2022. 1. 28, 국립중앙의료원)

I 사업 개요

1. 사업 목적

- 무보험 외국인의 해외 입국시 코로나 진단 관련 비용 및 유증상시 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,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 거부 및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함.
-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진단 및 치료부족으로 인한 코로나 전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.

2. 사업 대상

- 지원 대상
 - 코로나로 내원한 '무보험 외국인'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
 - ① '상호주의 원칙'에서 제외되는 국가(진료비 미지원 및 일부 지원)에 해당되는 코로나 확진 또는 의심 환자
 - ② 코로나 유증상 의심환자로 입원치료한 환자
 - ③ 해외 입국 후 필수 자가격리(2주)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

3. 지원 한도

- 1인당 지원 한도 : 연간 최대 5천만원에 한함.
 - 입원 횟수와 상관없이 연간 1인 한도금액임
- 지원 기간 : '21. 1. 21 ~ '21. 12. 31.(입원일자 기준)
- 소요예산 : 총 500,000천원

II 지원 사업 주요 경과

1. 지원사업 경과

- (사업시행) 사업지원 협약식 이후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 관련 지원 시행
- (대상자 선정) 의료진 의견 및 환자 일부 납부 후 재력부족으로 지원
- (지원실적) 11건(9명), 43,367천원 지원 (예산대비 **5.8% 사용**)

2. 사업 지원 내역

- 국적별 지원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	합계	중국	필리핀	몽골	베트남	우즈베키스탄	가나
합 계	11	2	3	2	2	1	1
1분기							
2분기	4	1	3				
3분기	3	1			2		
4분기	4			2		1	1

- 국적별 지원 금액

(단위 : 천원)

구분	합계	중국	필리핀	몽골	베트남	우즈베키스탄	가나
합 계	43,367	24,398	2,998	5,002	5,125	3,213	2,632
1분기							
2분기	23,764	20,767	2,998				
3분기	8,756	3,631			5,125		
4분기	10,847			5,002		3,213	2,632

3. 지원 사례

① 사례 1

- (국적) 중국(여, 74세), 무보험
- (입원 기간) 2021. 4. 16 ~ 4. 30(15일)
- (지원 비용) 20,767천원 = 24,767천원 - 4,000천원(본인수납)
- (선정 사유)
 - 코로나 합병증으로 순환기내과 입원치료를 받는데 입국한지 6개월이 안되어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
 - 가족들도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을 써주겠다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고 늘어나는 병원비용을 해결할 길이 없어 막막했는데
 - 이런 외부 지원소식에 가족들은 너무나도 감사함을 표시함

② 사례 2

- (국적) 베트남(여, 36세, 산모), 무보험
- (입원 기간) 2021. 9. 6 ~ 9. 17(12일)
- (지원 비용) 5,125천원(전액지원)
- (선정 사유)
 - 코로나 확진으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였고 근로는 중단된 상태이며
 - 보호자는 산모와 태아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진료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
 - 동사업 지원 결정으로 환자가족은 무사히 치료 후 퇴원하게 되었으며,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하였음.

③ 사례 3

- (국적) 우즈베키스탄(여, 19세), 무보험
- (입원기간) 2021. 11. 18 ~ 11. 25(8일)
- (지원비용) 3,213천원(전액지원)

- 선정사유

- 임신(15주)중이며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중에 급성 신우염으로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는데
- 엄청난 진료비 걱정으로 산모 및 태아는 모두 심리적 불안증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에서
- 지원사업을 알게되어 무사히 퇴원하였으며 병원관계자에게 너무나도 감사의 표시를 전함